

발행번호 : 7308-0008

지 급 보 증 서

(특정채무보증용)

수입
인지

2024 년 12 월 31일

루이비통코리아(유)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앱(kr.louisvuitton.com)에서 선불식 통신판매하는 재화 등 (정보통신망에 의해 전송되거나 제 3 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제외)을 구매하는 국내 소비자 중

보증처 : 신용카드를 제외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결제한 고객

보증인 (주) 한국 씨티은행 **중앙기업업무센터**

귀하에 대하여 다음 기재사항과 뒷면 약관에 따라 지급을 보증합니다.

보증금액	금 인십이억원 정
보증기일	2025 년 01 월 01 일부터 2025 년 12 월 31 일까지
피보증 채무의 내용	채무자 명칭 : 루이비통코리아 (유) (102-81-29113) 주소 : 서울 중구 청계천로 100 서파 1
	채무종류 *정착철회 기간 (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 일) 내 권리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 환급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
보증채무의 이행청구시기	보증일 *재화등의 공급의무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 *구매한 재화등의 배송전 취소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환급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 할 수 있다. 1.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있는 때 2. 파산·화의개시나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
보증채무의 이행청구기간	주채무의 보증기일 경과후 2개월 이내에 귀하의 보증채무 이행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.
특약사항	1.보증처는 씨티그룹의 내부정책 및 관련 법률, 규정 등에 의해 거래금지 국가로 지정된 지역("거래금지지역")에 소재하지 않고, 어떠한 제재조치를 받은 자("거래금지대상") (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)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, 국내 소비자에 한 합니다. 만약 보증처가 거래금지지역에 있는 자 혹은 거래금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, 당행은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
보증채무이행장	2.다수의 보증처가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에 은행에 그 이행청구가 접수된 순서대로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. 만약 다수 보증처가 보증금액을 초과하여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에 은행은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지급보증 채무의 이행에 갈음합니다.
청구금액	3.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 제 6 조에도 불구하고, 보증처는 아래의 서류를 직접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기로 합니다.
위 청구금액	① 보증처의 환불 요청이 관계 법령이 보장하는 권리 행사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나, 보증신청인이 해당 환불 요청을 거부하였음을 입증하는 보증신청인이 작성한 확인서
명칭	② 보증처가 보증신청인에게 재화 등의 거래 청약을 하고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했음을 입증하는 구매 증빙서류 (현금영수증 등)
	④ 구보증서(증서기번호 65611)회수조건, 본 보증서의 효력 개시일로부터 구보증서(증서기번호 65611)는 효력이 소멸되며, 구보증서에 대한 잔존채무도 본 보증금액의 범위내에서 보증합니다.
주소	

<보증서 발급조회 안내>

*인터넷 **한국씨티은행** .citibank.co.kr -> 기업고객 인터넷뱅킹(cat-i) -> 지급보증서 발급조회